

## 차고 및 주차장 관련 안내 사항

### 사업체 허가 상태 및 이의 내역을 확인하세요

DCWP 차고 및 주차장 허가는 차량을 5대 이상 수용할 수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합니다. DCWP는 현재 뉴욕시 주변에 1,600곳이 넘는 주차장 및 차고에 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고와 주차장을 찾을 때 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DCWP 허가 검색 도구](#)를 사용해 사업체가 DCWP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판 확인

공공 입구에 눈에 띄게 간판을 세워야 하며, 간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체명, 사업체 주소, DCWP 허가 번호, DCWP 허가증에 표시된 차량 수용 규모,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전거 주차 공간(차량 수용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영업시간.

차고나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공공 입구마다 최소 6인치 높이의 글자로 “Capacity Full”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게시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격 확인

차고와 주차장마다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주간/야간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별도의 요금 표지판을 나란히 게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차고와 주차장은 분이나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총 요금과 최대 요금이 표시된 요금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예: 1시간 이내: \$ . . . . 2시간 이내: \$ . . . . 최대 요금: . . . . 시간: . . . . 또는 최대 요금: 오전 6시~오후 7시. . .

특정 요일이나 특수한 경우에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경우, 일반 요금 표지판 바로 아래에 요금을 게시하거나 일반 요금 표지판 옆에 별도의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차고 및 주차장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차고와 주차장은 고객의 차량, 자전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서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의 제기**

DCWP는 소비자에게 무면허 차고를 신고하고 차고나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DCWP 웹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